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7. 12. 12.

개정 2001. 3. 23.

제 1 조 (목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학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 및 학위 수여 사정 예비 심의
2. 성적 및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는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이상 당연직) 및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무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7 조 (의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기타) 위원회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교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또 특별한 임무를 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5년 8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예과학사위원회 규정

제정 1979. 11. 2

개정 1997. 12. 12

2001. 3. 23

2007. 12. 6

제 1 조 (목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예과(의예과, 수의예과) 학사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예과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장, 자연과학대학 교무 및 학생부학장, 각 예과 학과장,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교무 및 학생부학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제정,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과 과정 수료 사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예과 과정 수료 사정의 예비 심의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장)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자연과학대학 교무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6 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2. 9. 4.

개정 1993. 3.

1997. 12. 12.

2000. 3. 10.

2001. 3. 23.

2001. 12. 14.

제 1 조 (목적) 서울대학교 학칙 제39조에 의거하여 자연과학대학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기능) 본 위원회는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제정·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는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기획실장, 각 학부(과)의 학부(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무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연계전공 시행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과학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한다.) 학사과정의 연계 전공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연계 전공 이수라 함은 소속 전공 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 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연계 전공 이수 적용범위는 본 대학 내의 전공 과정과 타 대학의 학부·학과를 포함한다.

제 4 조 (선발 인원 및 기준) 소속 전공이 결정된 학생들 중 전 과목 평점 평균이 2.5 이상인 경우, 소속 전공 이외에 본 대학 또는 타 대학의 다른 전공을 연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에서 본 대학으로의 연계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각 전공에서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신청 및 절차) 연계 전공의 신청은 소속 전공을 결정한 학생에 한하여 매 학기(졸업 학기 제외) 개시 2주 전에 연계전공신청서(별첨 3-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본 대학내 복수 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전공을 경유하여 대학에 제출하며, 타 대학에서 본 대학으로의 연계 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에 제출한다.

제 6 조 (과정 이수학점) ①연계 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연계 전공 시 각 전공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교과목이 본 대학의 공통 과목인 경우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③연계 전공의 허용으로 수강 인원이 폭증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소속전공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하며, 그 외 학생들에 대한 수강 제한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연계전공의 취소) 연계 전공의 이수를 취소코자 할 때는 매 학기 개시 2주 전에 연계 전공취소원(별첨 3-2)을 소속 전공을 경유하여 본 대학에 제출한다. 다만, 대학 간 연계 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에 제출한다.

제 8 조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계 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사실을 기재하며, 졸업 증서는 이수한 각 전공마다 별도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될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적용제한) 이 지침은 1996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신입학생의 연계 전공은 본 대학 내로 제한하고, 199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는 대학 간에도 적용한다.

【별첨 3-1】 複數專攻申請書

연 계 전 공 신 청 서

소 속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전공	
학 번 :	성 명 :	(인)	
연계전공신청대학 및 학부(과) :	대학	학부(과)	전공

위와 같이 연계전공학과(전공)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전공)

대학장(직인)

(연계전공)

대학장(직인)

* 학생은 기입하지 마세요

* 전체교과목 학점의 평점 평균			* 적 격 여 부	
취득학점	평점 합계	평점평균	적 격	부적격
주전공 학부(과)장		(인)	연계전공 학부(과)장	(인)

첨부: 성적일람표 1부

※ 소속 전공이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연계 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학생은 연계 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자연과학대학 기초교육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1999. 6. 22

개정 2000. 9. 1

2007. 12. 6

제 1 조(목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주관하는 학사과정의 기초교육의 내용을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자연과학대학이 주관하는 모든 기초 교육에 관련된 교과과정의 구성 및 내용.
2. 의·수의예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
3. 기초과학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제 3 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5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제정 2008. 6. 5

개정 2023.12. 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서울대학교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사·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및 운영)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전공(이하 “학부(과)”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 6개월(1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년(2개 학기)

제 4 조 (지원자격 및 절차) ①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에 소속되거나, 해당 학부(과)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3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학부(과)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각 학부(과)의 장이 정한다.

제 6 조 (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 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 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각 학부(과)장은 매 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고, 학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시 매 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 8 조 (연계과정 운영 등) ①각 학부(과)의 장은 연계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초에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연계과정 학생은 매 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학부(과)에 소속된 자는 타 학부(과)로 전과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학부(과)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해당 전공의 이수를 포기할 수 없다.

④연계과정 학생은 선발된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의 학부(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⑤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부(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 등록 및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 학기 말까지 포기원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계과정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8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10 조 (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이상인 자
2. 당해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를 1회 이상 제출한 자

②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연계과정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졸업신청서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연계과정의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면제한다.

②연계과정의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③연계과정의 석사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세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8. 6.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자연과학대학 학사 · 석사 연계과정 운영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2023. 12. 8.)

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2007. 10. 31

개정 : 2009. 5. 18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개 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 학점(석·박사통합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별표3】** 를 자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일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에 학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5조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며, 영어가 모국어인 자는 반드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전공시험)의 시험과목(이하 “교과목”이라 한다)선정과 세부시행방식은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학장은 각 학문(전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로 위임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학부(과) 내규에 명시하여 정하고, 학부(과) 내규를 개정된 경우에는 시행하기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학부(과)별 종합시험(전공시험) 시행 내규는 **【별표4】**과 같다.

제6조 (영어시험의 대체시험) ①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성적 또는 TOEFL(PBT 성적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인정 기준은 **【별표2】** 와 같다.<개정 2009. 5. 18>

②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 초, 2학기는 10월초)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성적에 대하여 합격인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 이외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성적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 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제8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외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각 학위과정별 논문제출자격 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2.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영어권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로 인하여 영어성적 제출면제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며, 영어가 모국어인 자는 반드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 석사·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시험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⑦ 학장은 매학기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소정 기일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인정점수) 시험(영어과목 제외)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재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재응시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합격자 발표 및 보고) 학장은 매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대학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채점)지 : 5년
2. 결과표(사정일람표) : 준 영구
3. 기타 서류 : 1년

제15조 (내규, 지침 등 보고) 학장은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내규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7.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1항 “별표2”의 개정 지침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과목표

구 분	과 정	학 부(과)	외 국 어 시 험 과 목	
			필수	제 2 외 국 어
자연계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소속 각 학부(과) 및 협동과정	영어	미 부 과

註 1. 자연과학대학 : 2005.1학기부터 박사 제2외국어 미부과[’04년 제9차 대학원위원회 결정]

【별표 2】

논문제출자격 영어과목(TEPS) 기준 등급

2009. 5. 18 기준

대 학(원)		논 문 제 출 자 격 기 준								비 고
		’00학번 이전		’01~’07 학번		’08학번 이후		현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모든 학과 (뇌인지과학과 제외)	501점	501점	550점	550점	551점	551점	551점	551점	
	뇌인지과학과							664점	664점	

註 1. TOEFL성적은 TEPS성적과의 상관 기준표[별표 2의 2, 3]를 적용하므로 표기를 생략함

2. 1급 : 801-900, 2+급 : 701-800, 2급 : 601-700, 3+급 : 501-600

【별표2의 2】

TEPS - TOEFL(CBT · IBT) 점수 환산 기준표

(2009학년도 1학기('09.8.31)까지 적용)

1. 점수별 환산표

TOEFL (CBT)	TOEFL (IBT)	TEPS (점수)	비 고
193	69	501	
203	74	550	
203	74-75	551	
220	83	664	

【별표2의 3】

TEPS - TOEFL(CBT · IBT) 점수 환산 기준표

(2007년도에 새로이 제작된 기준 : 2009학년도 2학기('09.9.1)부터 적용)

1. 점수별 환산표

TOEFL (CBT)	TOEFL (IBT)	TEPS (점수)	비 고
193	69	501	
210	77	550	
210	77-78	551	
233	90-91	664	

【별표 3】

응 시 원 서(□석사 □박사)

()학년도 ()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학부(과)		성명		수험번호	(응시자가 기록하지 않음)
학 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 진 (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사진이 동일해야 함)	
주요학력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과정 입학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과정 (수료, 수료예정)				
학적사항	등록회수	취득학점 (과정간 통산학점 포함)			
	회	학점			

응 시 현 황						
과 목 명		금회응시여부	기 합 격		비 고	
한국어 (외국인만 해당)		□응시 □미응시	년	월	영어 합격	인 정 추후 예정
전공과목		□응시 □미응시	년	월	인정 여부	

본인은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 합니다.

신 청 자 : (인)

상기자의 지도교수로서 학력, 인품, 태도 등으로 보아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자연과학대학 학부(과)장 (인)

자연과학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응시자격 : 등록회수 2회 이상이면서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석·박사통합과정에서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 금회응시여부 : 금회응시여부를 필히 □표내에 √표기 해야함
- ※ 기합격 : 기합격한 과목의 합격년월을 기재 (기합격 여부는 소속 학부(과)에 문의)

수험표 (□석사, □박사)						수험 번호
()학년도 ()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학부(과)		학번		성명		사 진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 진과 동일원판 부착 후 학장 직인으로 계인)
과 목 명			금회응시여부	기 합 격		
한국어 (외국인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응시, <input type="checkbox"/> 미응시	년	월	
전공 과목			<input type="checkbox"/> 응시, <input type="checkbox"/> 미응시	년	월	